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22 선고 2019가단1294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7. 2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,834,095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조상민

별지